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517
----------	-----

提出年月日：1994.

提出者：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道路法 施行令의 改正(1994.9.16 大統領令 第14382號)으로 因하여 電氣管 및 電氣通信管에 대한 占用面積 算定方法이 改善됨에 따라 對象物의 占用 境遇에 지켜야 할 基準을 定하므로서 道路敷地管理에 萬全을 기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電氣管 및 電氣通信管의 設置를 위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境遇 지금까지는 각각의 管의 直徑을 합한 것을 그 占用面積으로 算定하던 것을 앞으로는 管을 다발로 묶어 埋設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管으로 보아 占用面積을 算定하도록 함으로써 道路占用料의 算定方法을 合理的으로 改善함.

3. 參考事項

道路法施行令中 改正令(大統領令 第14382號: 1994. 9. 16 ; 別添)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점용물 종류 및 면적란의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고, 제3호중 “간관”을 각각 “간관(돌출간관을 포함한다)”으로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하고 제3호중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을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

(별표1)의 제10호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 고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종류 및 면적란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 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 종류 및 면적		기준 단위			점 용 료	점용물 종류 및 면적		기준 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 전차, 상전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1개	1년	900	1. 전주, 공중 전차, 상전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1개	1년	900	
	전주와 유사한 것			1,350		전주와 유사한 것			1,350	
	공중전차			36,150		공중전차			36,150	
상전차 및 기타의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표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상전차 및 기타의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표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상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직경0.1미터 이하	길이1미터	1년	5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상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직경0.1미터 이하	길이1미터	1년	550	
	하수도관, 직경0.1미터초과0.2미터이하			1,150		하수도관, 직경0.1미터초과0.2미터이하			1,150	
	직경0.2미터초과0.4미터이하			2,300		직경0.2미터초과0.4미터이하			2,300	
	직경0.4미터초과0.6미터이하			3,500		직경0.4미터초과0.6미터이하			3,500	
	직경0.6미터초과0.8미터이하			4,650		직경0.6미터초과0.8미터이하			4,650	
	직경0.8미터초과1.0미터이하			5,850		직경0.8미터초과1.0미터이하			5,850	
	직경1미터초과			11,700		직경1미터초과			11,700	
	기타의 것	직경0.1미터 이하	길이1미터	1년		850	기타의 것	직경0.1미터 이하	길이1미터	1년
	직경0.1미터초과0.2미터이하			1,750		직경0.1미터초과0.2미터이하			1,750	
	직경0.2미터초과0.4미터이하			3,500		직경0.2미터초과0.4미터이하			3,500	
	직경0.4미터초과0.6미터이하			5,250		직경0.4미터초과0.6미터이하			5,250	

현행					개정안						
(금액의 단위: 원)					(금액의 단위: 원)						
검용물 종류 및 면적		기준 단위		검 용 료	검용물 종류 및 면적		기준 단위		검 용 료		
		검용 단위	기간 단위				검용 단위	기간 단위			
		직경0.6미터초과0.8미터이하		7,000			직경0.6미터초과0.8미터이하		7,000		
		직경0.8미터초과1.0미터이하		8,750			직경0.8미터초과1.0미터이하		8,750		
		직경1미터초과		17,500			직경1미터초과		17,5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일시 설치한것	포시 면적 (1월이안검용) 1제곱미터	1일	2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물출간판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것	포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200
		기 타	포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58,950			기 타	포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58,950
	사실안내표지		1개	1년	49,100	사실안내표지		1개	1년	49,10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설치한 것	직용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것	포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의 용도			200		기타의 용도			200	
아 취	도로 횡단	포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117,900	아 취	도로 횡단	포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117,900		
	기 타			58,950		기 타			58,950		
(신설)					※ 비 고						
					<p>위표 제2호의 검용물 종류 및 면적한를 정거장, 전기통신관공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건물 명명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한 직경은 도로 검용 허가건별로 전세면을 의입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p>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드로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1994년 9월 16일

국무총리 이 영 덕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김 우 석

◎대통령령 제14,382호

드로법시행령중개정령

드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관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드로집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드로집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공의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의 당해 드로집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 된 날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에 부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드로의 공작을 필요로 하는 목적물 교통신용덕처에 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6. 송유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택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당해 지역의 의견과 기타 부속이한 사유로 드로구역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주택지역 또는 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중·개축·보수·이전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공작공사로서 그 공작물 높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공작공사 또는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평면공작공사인 경우

제24조의제2항제2호중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을 "시정방법"으로 하고, "시정기간"을 "시정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제3항본문을 "법 제41조제1호"를 "법 제41조"로

제27조의제3호중 "공인건축"을 "공인건축조정"으로 하고, "공인건축조정"을 "공인건축조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드로법"을 "법"으로 한다.

별표 2의 집행종의 종류란의 제2호중 "하수오관"을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집행종의 종류란의 제3호중 "간판"을 각각 "간판(중요간판을 포함한다)"으로, "사실한대표시"를 "사실한대표지"로 하고, 기준단위의 집행단위란의 제3호중 "집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위표 제2호의 집행종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속이한 사유로 2이상의 단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측점은 드로집용허가건별로 전직관을 의결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리양도가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드로집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허가권 신청중인 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함도 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4. 12. 26.

産業建設委員會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4. 12. 10. 大田直轄市長

나. 回附日字 : 1994. 12. 14.

다. 上程日字 : 第3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5次 産業建設委員會 (1994. 12. 26)
上程, 質疑, 審査,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建設住宅局長 黃 昨 善)

가. 提案理由

道路法 施行令의 改正 (1994. 9. 16 大統領令 第14382號)으로 因하여 電氣管 및 電氣通信管에 대한 占用面積 算定方法이 改善됨에 따라 對象物의 占用 경우에 지켜야할 基準을 定하므로서 道路敷地管理에 萬全을 기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電氣管 및 電氣通信管의 設置를 위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管의 直徑을 합한 것을 그 占用面積으로 算定하던 것을 앞으로는 管을 다발로 묶어 埋設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全體를 하나의 管으로 보아 占用面積을 算程하도록 함으로서 道路占用料의 算程方法을 合理的으로 改善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류 기 현)

가.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앞의 內容과 같음.

나. 檢討意見

- 今番에 改正하고자 하는 大田直轄市 道路占用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은 1994年9月6日자로 大統領令 第14382號에 依據 道路法 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關聯 條例의 內容을 改正하는 事案임.
- 改正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道路占用物의 種類란에 下水道管 다음에 電氣管, 電氣通信管을 새로 插入하며, 이에 대한 道路占用面積 算定方法을 改善하는 事項으로써 電氣管 및 電氣通信管의 設置를 위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경우 對象物의 占用에 대한 單價適用을 지금까지는 각각의 管의 直徑을 합한 것을 그 占用面積으로 算程했으나 앞으로는 管을 다발로 묶어 埋設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全體를 하나의 管으로 보아 占用面積을 算程하도록 함으로써 道路占用料의 算定方法을 合理的으로 調整 및 改善시키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占用料 賦課方法의 改善에 따라 現在의 施設物에 대한 賦課를 關聯 圖面資料에 依據 다시금 算出을 하여야 하나 細部的인 資料의 未確保등으로 正確한 算出을 期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豫想이 되는 바, 關聯部畧에서는 該當機關으로부터 資料를 早速히 引受하여 賦課에 차질이 없도록 萬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가 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없 음

5. 討論 要旨

없 음

6. 小委員會 審査內容

없 음

7. 少數意見의 要旨

없 음

8. 審査 結果

原案可決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